붙임1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

<table>
<tr><th colspan="8">피해자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공공기관명</td><td colspan="6">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기관</td><td>㈜케이씨에이</td><td>평가
기간</td><td>2025.07.14
~
2025.09.30</td><td>평가예산</td><td colspan="2">□ 1천만 원 미만
■ 1천만 원 이상~3천만 원 미만
□ 3천만 원 이상~5천만 원 미만
□ 5천만 원 이상~1억 원 미만
□ 1억 원 이상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평가대상시스템 개요</td><td>시스템명</td><td colspan="3">피해자지원시스템</td><td>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</td><td colspan="2">이관 구축·개발</td></tr>
<tr><td>추진개요 및 목적</td><td colspan="6">•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25년도에 이전받아 자동차 피해자지원을 위하여 운용 중인 피해자지원시스템 개인정보처리 서비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통해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을 최소화하여 대내외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
• 피해자지원시스템 통한 업무효율성 및 자동차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보안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추진 성격</td><td>대상 여부</td><td colspan="2">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5만명 이상 민감정보, 고유식별정보 처리</td><td rowspan="2">추진예산</td><td rowspan="2">410,000천원
(VAT 포함)</td></tr>
<tr><td>추진 주체</td><td colspan="2">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</td></tr>
<tr><td>추진 근거</td><td colspan="2">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
- 피해자지원시스템 이관 구축</td><td>추진유형</td><td>■ 신규 구축
□ 변경(고도화)
□ 운영</td></tr>
<tr><td>신기술 유형</td><td colspan="4">신기술 적용 없음</td></tr>
<tr><td>주요 내용</td><td colspan="6">• TS(교통안전공단(김천))에 구축된 피해자 지원시스템의 개발소스를 활용하여 진흥원(서울)에 시스템 구축
• 내부시스템, 외부시스템, 기타시스템의 내•외부 연계 개발
• 피해자지원시스템 김천에서 서울로 이전</td></tr>
<tr><td>운용 체계 변경 내용 (변경인 경우)</td><td colspan="6">• 기존 시스템 이관 구축 및 개발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개인정보파일개요</td><td>파일명</td><td>정보주체수</td><td>개인정보 항목</td><td>제3자 제공</td><td>개인정보 처리목적</td></tr>
<tr><td>피해자지원업무</td><td>125,604건</td><td>[필수]
이름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, 계좌정보, 생활현편정보, 장애정도
[선택]
-</td><td>행정안전부</td><td>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지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</td><td colspan="4">• 수집 : 자동차사고 피해자지원을 위해서 본원/분원을 통해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지원시스템에 담당자가 업로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, 최초지원 이후 추가지원 시에는 피해자지원시스템 웹을 통해서도 온라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 가능함.
• 보유 및 이용 : 수집된 피해자지원(14세미만 아동 포함) 개인정보를 검토하여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유 및 이용 등 피해자지원 업무 처리를 진행함.
• 제3자 제공 :
- 공공 개인정보를 수집받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정보 제공하며 그 외는 없음
• 파기 : 보유기간이 경과된 서류는 파기하고 온라인 정보는 영구보관하고 있음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영향평가기준</td><td>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</td><td colspan="4">•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(5장) : 평가 대상시스템과 연관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함.</td></tr>
<tr><td>주요 평가 기준</td><td colspan="4">•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『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(제2024-10호, 2024.10.31)』제10조(평가영역 및 평가 분야), 11조(평가항목)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준용하여 4개 평가영역, 21개 평가 분야, 46개 세부분야, 77개 평가항목을 평가하였음.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·평가</td><td colspan="4">•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도출한 결과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는 2건,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는 1건,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2건,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7건 등 총 12건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도출하였음.</td></tr>
</table>

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	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 조치방안	• 도출한 침해요인을 기준으로 위험도 산정을 하고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함. (개선과제는 11건) - 개인정보 보관기간 변경, 개인정보 보관기간 최소한의 기간으로 산정 - 일정시간 이상 미사용 시 접속 차단 - 웹시스템 취약점 점검 - 웹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-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-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-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행정안전부 제3자 제공으로 공지 - 강화된 추가인증 적용 - 개발, 운영 환경을 분리하여 개발 및 운영 - 개인정보 마스킹 및 웹화면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기능 적용 - 비정상적인 접근 방지
	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 사항	• 체납자(정보주체)의 침해요인에 대한 인지사항은 아래와 같음. -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한 위탁 사항, 개인정보파일 공개 부문
평가 결과		• 『피해자지원시스템』에 대한 평가 결과, 77개 평가항목 중 이행 54개, 부분 이행 11개, 미이행 1개, 해당 없음 11개로 평가되어 이행율은 90%임.

[별첨] 총괄 개인정보흐름도

